##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48 발의연월일: 2022. 12. 15.

발 의 자:신영대·박찬대·전해철

김영진 · 김회재 · 윤영덕

장경태 • 전용기 • 김영배

김경만 · 고용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규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등과 같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드는 광고물과 달리 피켓, 판넬과 같이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적은 저비용의 것들에 대해서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 금지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준비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 다는 결정을 내린 바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 개 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광고물 게시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 선거운동 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조정하고자 함(안 제90조).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1호 중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을 "광고시설을"로,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을 "설치·진열·배부하는"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광고시설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중 "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設置・진열 ・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販賣하거나 하 게 한 者"를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	
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	
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	
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	1
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u>광고시설을</u>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u>설치·진열·배부하는</u>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사. (생 략)

아. 第90條(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設置・진열・게 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 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

자. ~ 너. (생 략)

- 2. ~ 4. (생 략)
- ④ · ⑤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정하는 광고시설	<u>글</u>
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위 등	<u>=</u>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기	4
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
· (2) (현행과 같음)	

0 (2012)
③
1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제1항제1호부터 3호</u> 까지를 위반한 행위를 하

자.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거나 하게 한 자

④·⑤ (현행과 같음)